

## ■ 목 차

### ■ 해외업무 사례 ■

<b>[중국]</b> 한국 법인의 중국 물류 합작회사 설립 관련 자문.....	3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 심천거래소 상장 관련 자문.....	3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 지분매각 관련 자문.....	4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 임원 해임 관련 자문.....	4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회사 해산 소송 관련 자문.....	5
한국 법인을 대리하여 대출 분쟁 중재 관련 자문.....	5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토지사용권 회수 관련 자문.....	6
한국 법인의 홍콩 지점을 대리하여 선박 매각 관련 자문.....	6
<b>[베트남]</b> KT렌탈 하노이 지점 설립 관련 자문.....	7
<b>[미얀마]</b> 한국 기업의 미얀마 한따와디 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자문.....	8
한국 기업의 미얀마 내 호텔 사업 관련 자문.....	8
한국 법인의 미얀마 건설업 추진 관련 자문.....	9
일본 기업의 미얀마 부동산 개발 관련 자문.....	9
일본 기업의 합작법인 설립 및 미얀마 내 호텔 사업 관련 자문.....	10
<b>[러시아]</b> 국내 발전회사를 위하여 러시아 케메로바주 소재의 석탄회사 인수 법률 실사 및 관련 자문.....	11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법률지원 업무 개시.....	11

### ■ 해외업무 논단 ■

<b>[중국]</b> 「증권투자자기금판매관리방법」 개정안 발표 시행.....	13
<b>[베트남]</b> 개정 노동법 주요 내용.....	15
<b>[인도네시아]</b> 새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 규정과 외국인의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	21
<b>[러시아]</b> 러시아연방 자원개발투자 관련 법령의 최근 개정 현황과 판례 동향.....	23

### ■ 최신 해외정보 ■

<b>[중국]</b> 증권감독관리위원회 RQFI 중국 증권투자 관련 새로운 규정 발표.....	27
중국 상무부서 「2013년 외상투자 유치업무 지도의견」 발표.....	27
외자은행 펀드위탁 관리자격 신청 기능.....	27
<b>[베트남]</b> 사업등록증의 전자 등록 계획 치질.....	29
<b>[캄보디아]</b> 캄보디아 재정관리법 개정 주식이전 등록에 대한 등록세 부과.....	29
<b>[러시아]</b>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러시아연방 민법 시행 예정.....	31
러시아연방 주식회사법 개정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8일로 단축.....	31
러시아연방 정부 소유 기업 매각계획 수정 발표해.....	31
러시아연방 정부 표준실시협약 개정해.....	32
<b>[일본]</b> 카지노 합법화의 움직임.....	33
소니 의료사업 진출.....	33
세계개정 일본국적이 아니라도 상속세 부과대상.....	33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

## 한국 법인의 중국 물류 합작회사 설립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법인을 대리하여 중국 물류 합작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전문가]



정철 변호사



이민희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남유선 미국변호사

##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 심천거래소 상장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 심천거래소 상장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전문가]



이행규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구상수 공인회계사

##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 지분매각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 지분매각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전문가]



정철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 임원 해임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 임원 해임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전문가]



신민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회사 해산 소송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회사 해산 소송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전문가]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경영동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 한국 법인을 대리하여 대출 분쟁 중재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법인을 대리하여 대출 분쟁 중재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전문가]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경영동 중국변호사

최홍화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토지사용권 회수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토지사용권 회수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전문가]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최홍화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 한국 법인의 홍콩 지점을 대리하여 선박 매각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법인의 홍콩 지점을 대리하여 선박 매각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전문가]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경염동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베트남 ■

## KT렌탈 하노이 지점 설립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KT렌탈의 베트남 법인(KUMHO RENT-A-CAR (VIETNAM) CO., LTD.)을 대리하여 베트남 하노이 지점 설립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전문가]



정정태 변호사  
호치민시 사무소장



Bui Tran Dang Khoa  
베트남변호사



Tran Thi Phuong Trang  
베트남변호사



최규철 전문위원

## ■ 해외업무 사례 - 미얀마 ■

### 한국 기업의 미얀마 한따와디 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인천국제공항공사컨소시엄을 대리하여 미얀마 한따와디 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전문가]



양영태 대표변호사



정철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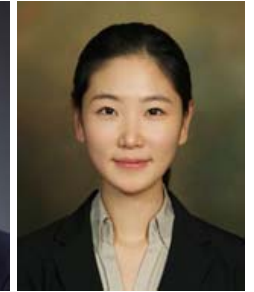
류혜정 변호사



서준희 변호사



이훈 미국변호사



남유선 미국변호사

### 한국 기업의 미얀마 내 호텔 사업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미얀마 내에 호텔을 건설하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전문가]



정철 변호사



이태현 변호사



이훈 미국변호사



남유선 미국변호사



## 한국 법인의 미얀마 건설업 추진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미얀마 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전문가]



정철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강재영 변호사



고세훈 변호사



임이지 변호사

## 일본 기업의 미얀마 부동산 개발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현지 법인 설립 후 미얀마 내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일본 법인을 대리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전문가]



정철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고세훈 변호사



남유선 미국변호사



장성 수석자문위원



김홍영 전문위원

## 일본 기업의 합작법인 설립 및 미얀마 내 호텔 사업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합작법인 설립 후 미얀마 내에 호텔을 건설하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전문가]



정철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고세훈 변호사



남유선 미국변호사



장성 수석자문위원



김홍영 전문위원

■ 해외업무 사례 - 러시아 ■

## 국내 발전회사를 위하여 러시아 케메로바주 소재의 석탄회사 인수 법률 실사 및 관련 자문

러시아 케메로바주 소재 석탄광산 인수를 위하여 관련회사 및 면허에 관한 법률 실사 및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정철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강재영 변호사



임이지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이상희 미국변호사



남유선 미국변호사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법률지원 업무 개시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5월부터 1년간 러시아 법률관련 민  
원에 관한 자문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

### 「증권투자기금판매관리방법」 개정안 발표 시행



(법무법인 지평지성 경역동 중국변호사)

「증권투자기금판매관리방법」(이하 '판매방법')은 2011년 10월부터 시행하였는바, 펀드판매기관의 다양화, 전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펀드판매기관으로 상업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관 및 독립판매기관 등 4가지 형태의 190개 업체가 펀드판매업무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판매방법' 시행 후 펀드판매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투자자문업체는 기존의 1개로부터 6개로 증가하였으며, 독립적인 펀드판매기관은 전무하던 때로부터 19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새로운 펀드판매기관 유형의 출현은 새로운 펀드판매 모델과 이념을 출현시켰으며, 펀드판매기관 간의 차별화된 경쟁 및 펀드업의 발전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나, 펀드업의 발전과 더불어 기존의 '판매방법' 중의 일부 내용은 새로운 발전추세에 맞지 않게 되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판매방법'을 공모펀드판매업무에 관한 관리규범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펀드판매자격의 신청에 대하여 등록제를 시행하며,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주체를 중국증권감독위원회의 파출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3. 펀드판매기관의 유형을 추가하여 기존의 상업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관 및 독립판매기관 외에 선물회사, 보험회사도 펀드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펀드판매기관 유형별 인력요건을 세분화하여 국유은행, 주식상업은행, 우체국,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의 경우 펀드업무취급자격을 갖춘 인원이 30명 이상, 도시상업은행, 농업상업은행 및 선물회사의 경우 20명 이상, 독립판매업체, 증권투자자문업체, 보험중개회사 및 보험대리회사의 경우 10명 이상 갖추도록 명시하였습니다.
5. 증권회사, 선물회사에 대한 고객의 자산, 보증금을 유용하는 등 고객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미발생 기간 요건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였습니다.
6. 독립판매기관 및 지사의 기관명 등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기타 금융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7. 펀드판매기관의 본사만 펀드관리인과 판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고, 여건을 갖춘 지사도 직접 펀드관리인과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 펀드판매기관, 펀드판매결제기관 등의 업무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업계에서는 개정 판매방법의 시행은 펀드판매자격에 대한 행정인허가권을 기존의 중국증권감독위원회로부터 그 파출기관으로 이전하였으며, 펀드관리인과 판매계약 체결권을 지사에도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펀드판매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해외업무 논단 - 베트남 ■

개정 노동법 주요 내용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지난 2012년 6월 18일 베트남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동법이 2013년 5월 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진 신(新)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개정 전 구(舊) 노동법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신(新) 노동법	구(舊) 노동법
근로계약	<b>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 관련 금지 행위</b>	
	제20조 1. 근로자의 신분증, 자격증 원본 보관 2. 근로계약 이행에 대한 담보 요구	[신설]
	<b>영업 비밀 보호</b>	
	제23조 사용자는 영업 비밀과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영업 비밀 보호 및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신설]
<b>수습기간 및 보상</b>		
제27조 수습기간은 (i) 대학 교육 이상을 요구하는 업무는 60일, (ii) 중등 교육을 요구하는 업무 또는 전문 기술직의 경우 30일, (iii) 기타 업무는 6 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 수습기간은 (i) 특수한 고등 기술 이상을 요구하는 업무는 60일, (ii) 기타 업무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구 분	신(新) 노동법	구(舊) 노동법
	제28조 수습기간 동안 보수는 정규직의 85% 이상 이어야 한다.	수습기간 동안 보수는 정규직의 70% 이상 이어야 한다.
	<b>무효인 근로계약</b>	
	제50조 1. 다음의 경우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a) 법에 위반되는 내용일 경우; b) 무능력자가 체결한 경우; c) 법에서 금지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d) 근로자의 단체권을 제한할 경우.	[신설]
<b>근로계약의 해지</b>	<b>사용자의 해지권</b>	
	제38조 [삭제 사유] 1. 징계 해고. 2. 사용자의 영업 정지.  [추가 사유] 정직 기간 만료 후 15일 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제38조 1.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b) 징계 해고; (c) (i)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계속하여 12개월, (ii)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속하여 6개월, (iii) 기타 단기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반 이상 병가 사용 후에도 복무가 어려운 경우; (d) 자연재해, 화재 기타 불가항력; (dd) 사용자의 영업 정지.
	<b>기술 변화 또는 경제적 사유로 인한 구조조정</b>	
	제44조 [추가 내용]	제17조

구 분	신(新) 노동법	구(舊) 노동법
	<p>1. 근로자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변화의 경우, 사용자는 재고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새로운 보직 부여가 가능할 경우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p> <p>2. 경제적 사유로 재고용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제49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1. 조직 변경 또는 기술 변화로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해고할 경우 매 근속연수당 1개월치 급여 이상으로 합계 2개월치 급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b>초과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b>	
급여	<p>제97조 [추가 내용]</p> <p>3. 야간에 초과근로할 경우, 주간 초과근로수당(정상 급여의 150%, 200%, 300%) 및 야간근로수당(정상 급여의 30%)에 더하여, 정상 급여의 2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p>	<p>제61조</p> <p>1. 초과근로수당:</p> <p>(a) 영업일의 경우, 150%;</p> <p>(b) 주휴일의 경우, 200%;</p> <p>(c) 휴일 및 유급휴가일의 경우, 300%.</p> <p>야간에 초과근로할 경우, 본조 제2항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p> <p>2. 야간근로수당: 30%.</p>
근로시간 및 휴식	<b>초과근로</b>	
	<p>제106조</p> <p>정상 근로 및 초과 근로를 합산한 시간은 하루 12시간 이하이어야 하고, 초과근로시간은 월간 30시간 미만, 연간 200시간 이하이어야 하며,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도 연간 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107조</p> <p>다음의 경우 사용자는 초과 근로를 지시할 수 있다:</p> <p>1. 국가 비상사태시 국가 안보를 위한 동원;</p> <p>2. 자연재해, 화재, 전염병 기타 재해를 막고</p>	[신설]

구 분	신(新) 노동법	구(舊) 노동법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작업.	
	<b>휴일</b>	
	제115조 1. 음력 설 휴일은 5일로 한다. 2. 외국인 근로자는 본조 제1항의 휴일외에 본국의 민속 설 및 공휴일 1일의 추가 휴일을 갖는다.	제73조 음력 설 휴일은 4일로 한다.
	<b>출산휴가</b>	
	제157조 정상적인 경우 출산휴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산전 휴가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여성 근로자는 4개월 이상의 휴가 후 복직할 수 있다.	제114조 출산휴가 기간은 정부가 작업 조건과 환경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월 내지 6개월로 한다. 여성 근로자는 2개월 이상의 휴가 후 복직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b>외국인의 채용 조건</b>	
	제170조 2. 외국 회사, 단체 및 개인은 베트남내에서 근로할 외국인을 채용하기에 앞서 관할기관에 채용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b>노동허가를 받을 필요 없는 외국인 근로자</b>	
	제172조 [다음 2가지 경우만 노동허가없이 외국인의 근로를 허용] 1. 용역 제공을 위해 3개월 미만 근로할 경우; 2. 베트남 내 현존하는 자국민과 외국인이 해결할 수 없는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월 미만 근로할 경우.	제133조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외국인은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 분	신(新) 노동법	구(舊) 노동법
	<b>노동허가 기간</b>	
	제173조 노동허가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다.	제133조 노동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한다.
	<b>파견근로 사업</b>	
파견근로	제53조 내지 제58조 파견근로 사업은 조건부로 특정한 근로 형태에만 허용.	[신설]
	<b>징계의 종류</b>	
	제125조 [6개월내 낮은 급여 보직으로의 전보 삭제]	제84조 1. 취업규칙을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다음 징계를 할 수 있다: (a) 견책; (b) 6개월내 급여 인상 제한 또는 6개월내 낮은 급여 보직으로의 전보 또는 직위 해제; (c) 해고.
	<b>징계 해고 사유</b>	
징계	제126조 [추가 사유] 도박, 고의적 상해, 직장에서의 마약 투여, 사용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심각한 위해.	제85조 1. 징계 해고는 다음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a) 절도, 횡령, 영업 비밀의 누설, 기타 사용자의 재산 또는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해; (b) 급여 인상 제한 또는 낮은 급여보직으로의 전보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징계 기간중 위반 행위를 하거나 징계기간 후 직위해제의 징계를 받을 경우; (c) 월간 5일 또는 연간 20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할 경우.

구 분	신(新) 노동법	구(舊) 노동법
	<b>정기 건강검진</b>	
안전	제152조 2. 수습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여성, 위해 업종 종사자, 장애인, 미성년, 노령 근로자에 대해 매 6개월당 1회 이상.	[신설]
	<b>가사근로자</b>	
기타	제179조 내지 제183조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방 당사자는 15일 전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신설]
	<b>파업</b>	
	제214조 3. 사용자는 파업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직장을 폐쇄할 수 있다.	[신설]



## ■ 해외업무 논단 - 인도네시아 ■

### 새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 규정과 외국인의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



(법무법인 지평지성 권용숙 변호사 ·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이하 "BKPM" 또는 "투자청")은 2013년 4월 13일 자본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 규정(BKPM Regulation No. 5 of 2013 regarding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Capital Investment Licenses and Non-Licenses; 이하 "새 투자규정")을 공표하였습니다. 새 투자규정은 기존의 2009년도 제12호 규정(Head of BKPM Regulation No. 12 of 2009 regarding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Investment Applications, dated December 23, 2009) 등 과거의 관련 투자청 규정을 대체하며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영업일 이후, 즉 2013년 5월 27일부터 자카르타 지역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그 효력을 발합니다.

새 투자규정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한 사안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항으로는 (i) 종전에 명시적 규정 없이 BKPM 내부방침으로만 시행되어 오던 최소 자본투자금 요건(IDR 10billion) 및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IDR 2.5billion)을 각 새 투자규정에 명시하였고, (ii) 투자허가 단계를 간소화하여 종전에 시행되어 왔던 투자등록절차를 폐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 곧바로 예비허가 내지 사전허가(Izin Prinsip/Principle License)를 득하는 절차로 직행할 수 있으며, (iii) 종전에 2007년 투자법에 규정되기는 했지만 시행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제대로 적용되지 않던 것으로서, 만일 모회사 내지 지분 관계를 가진 특수관계회사가 외국인투자법인(PMA Company)으로 전환될 경우 그 자회사 내지 특수관계회사도 그로부터 1년 내에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을 의무를 확인하고, 이외에도 기존 투자계획의 변경과 점포 추가 등 사업확장 시 투자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하기 위한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사업의 시작(법인설립)에서부터 인허가의 변경 및 합병 내지 법인전환에 이르기까지 사업활동의 전 분야에 걸쳐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본고에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부분은 인도네시아 주식시장(Indonesian Stock Exchange; IDX)에 상장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과반수 상당을 외국인이 매수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새 투자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투자법상 외국인투자가 금지된 업종의 경우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인도네시아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과반 상당을 취득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법인을 경영할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새 투자규정이 있기 전 종전의 법령에 대한 해석상으로도 동일한 제한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었고, 실제로 종전 법제하에서도 일부 외국인에 의한 상장법인 인수 시도가 투자법상 제한으로 인해 좌절된 사례가 있기도 하였으나, 대다수 실무는 이와 달리 해석하여 상장법인은 투자법상의 투자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 즉 Negative List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상당수 외국투자자가 투자법상 투자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상장법인의 대주주 내지 지배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또는 비상장법인을 상장하려는 시도를 한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투자규정은 만일 상장법인의 과반주주 내지 지배주주가 외국인일 경우 해당 상장법인은 투자법상 외국인투자법인(PMA Company)로 취급된다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배주주란 사실상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 내지 회사의 경영 및 정책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며, 이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새 투자규정의 도입으로 인해 이제 과거에 존재하던 법적 논란은 제거되었고 따라서 종래 외국인 사이에 폭넓게 논의되던 소위 '상장법인 효용론'은 상당부분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상장법인의 과반주주 내지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오히려 원칙적으로 투자법상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약간의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상장법인에 대한 새로운 제한 규정이 소급효를 가지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 새 투자규정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상당한 법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상 본 바와 같이, 투자청이 최근 공표한 새 투자규정은 외국인 투자자의 사업전반에 연관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상장법인 주식 취득의 경우와 같이 상당한 혼란과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새 투자규정을 숙지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한편 법령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 해외업무 논단 - 러시아 ■

### 러시아연방 자원개발투자 관련 법령의 최근 개정 현황과 판례 동향



(법무법인 지평지성 류혜정 변호사)

#### 1. 2011년 전략적 외국인투자법의 개정과 2013년 지하구역법 개정안

2011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방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절차에 관한 연방법률」(2008년 4월 29일 N 57-FZ로 제정, 이하 '전략적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는 연방적 중요성을 갖는 광물의 탐사 및 채굴권을 보유한 기업의 지분 25%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대표이사 선임권 또는 이사 25% 초과 선임권을 보유하게 될 경우 사전에 정부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008년 4월 전략적 외국인투자법 제정 당시에는 정부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지분 비율이 10%로 정해져 있었고, 그 후속절차로 개정된 「지하구역에 관한 연방법률」에서도 외국인투자자가 1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사 선임권 등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광물 탐사 및 채굴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2008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연방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의 자원개발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적 외국인투자법 및 「지하구역에 관한 연방법률」(1992년 2월 12일 N 2395-1로 제정, 이하 '지하구역법')을 전면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장기간의 검토를 거친 결과, 2011년 하반기에 전략적 외국인투자법이 먼저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1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략적 외국인투자법의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에 정부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지분비율의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 조정

- 다음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 i. 국제금융기관(러시아연방 정부가 2012년 2월 3일 승인한 목록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한함)이 참여하는 거래
  - ii. 조세법상 러시아거주자(183일 이상 러시아 거주자)로서 이중국적이 아닌 러시아인과 러시아연방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간의 거래
-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추가 지분(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다만 전략적 외국인투자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구역법에서는 여전히 외국인투자자가 1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한 광물의 탐사 및 채굴권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법률 상호간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에 러시아연방 천연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하구역법 개정안에서는 개정된 전략적 외국인투자법에 부합하게 규정을 정비하는 외에 산금과 플래티늄계 금속(PGM),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는 탐사 과정에서 연방적 중요성을 갖는 광물이 발견되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종 개발 및 채굴권의 부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2. 2012년 지하구역법 개정

2012년 7월 28일 개정된 지하구역법은 연방적 중요성을 갖는 광물 매장지에 대해서는 경매에 의해서만 탐사 또는 채굴권이 부여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가격적인 요소 외에 지하구역에 관한 지질조사 및 탐사계획의 과학·기술 수준, 개발 잠재력,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기여도, 계획의 실현 기간, 지하자원 및 환경의 보호 조치의 효율성, 국방 및 국가안전보장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입찰절차를 허용하였으나, 심사 기간이 장기화되고 심사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에 의한 탐사 및 채굴권 부여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또한 종전 지하구역법 제49조(법 위반의 책임)와 제51조(손해배상)를 전면 개정하여, 지하구역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적 책임은 물론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유와 책임의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 3. 면허계약 위반에 따른 광물 탐사 및 채굴 면허 취소 관련 분쟁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경향

최근 탐사 및 채굴권 취득과 동시에 관할 정부기관과 체결한 면허계약상 면허유지 조건 위반을 이유로 탐사 및 채굴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에 관한 분쟁이 속출함에 따라 2012년 11월 27일 러시아연방 최고중재(상사)법원 법관회의는 N 9662/12호 결정으로, 면허계약 위반에 따른 광물 탐사 및 채굴 면허 취소의 법적 요건과 효과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최고중재(상사)법원의 판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계약은 광물 탐사 및 채굴 면허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면허계약에 명시된 의무는 모두 지하구역법이 정하는 면허의 핵심조건에 해당한다.
- 따라서 면허계약에 명시된 의무의 위반은 면허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i) 의무의 이행가능성 또는 불능(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함)과 (ii) 의무불이행을 초래한 사유에 관한 면허권자의 예견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면허권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 정부기관은 면허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나, 면허 취소는 공정성과 합리성의 관점에서 그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러시아연방 최고중재(상사)법원은 면허계약에 명시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안에서 면허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한을 미준수한 것은 아니나 면허권자의 귀책 사유 여부는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면허권자는 기한의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관할 정부기관에 면허계약의 수정이나 변경 등을 요청하지 않은 채 면허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연방 최고중재(상사)법원 법관회의의 결정은 사법유권해석으로 향후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정당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 증권감독관리위원회, RQFII 중국 증권투자 관련 새로운 규정 발표

지난 3월 1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인민폐 적격경외기구 투자자의 경내 증권투자 시험방법」 및 그 시행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RQFII(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제도는 2011년 말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바, 인민폐의 국제화, 자본시장의 대외개방 및 국내 증권기관의 해외업무 개척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하여 RQFII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규정에서는 RQFII 적용 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기존에는 펀드관리회사와 증권회사의 홍콩자회사로 제한하였으나 현재는 경외법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상품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기존에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채권, Share Warrant에 투자하도록 하였으나 시장상황에 따라 은행간채권시장의 상품 등 자주적으로 상품유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중국 상무부서, 「2013년 외상투자 유치업무 지도의견」 발표

지난 3월 14일, 상무부서는 「2013년 전국 외상투자 유치업무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동의견에서는 외국인의 현대 농업, 고신기술, 선진적인 제조업, 환경보호, 신에너지, 현대 서비스업 등 영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의견에서는 외국인을 고부가가치의 제조영역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며 외국투자자의 기술 도입 강화를 2013년 외상투자업무의 목표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 외자은행 펀드위탁 관리자격 신청 가능

지난 4월 2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연합하여 발표한 「증권투자펀드 위탁관리업무 관리방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동 방법은 2004년에 발표한 「증권투자펀드 위탁

관리자격 관리방법」을 개정한 것으로 주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위탁관리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예컨대, 펀드위탁 관리자격을 신청하는 상업은행은 10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바 여기에는 최근 3개 회계연도의 연말 순자산이 20억 위엔 이상이어야 하며 펀드종사자격을 구비한 인력이 동 부서 인력의 1/2 이상이어야 하는 등 요건이 포함됩니다.

(2) 위탁관리 자격의 후속관리를 강화하였는데 펀드위탁 관리업무를 장기간 취급하지 않거나 심각한 규정 위반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법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 방법에 의하면 외자은행도 펀드위탁 관리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최신 해외정보 - 베트남 ■

### 사업등록증의 전자 등록 계획 차질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3년 1월 9일 기업 등록에 관한 Decree 05/2013/ND-CP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회사는 사업등록증(한국의 법인등기에 해당함)의 신규발급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내에 그 내용을 상업등기소(National Enterprise Registration)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위 Decree 05는 2013년 2월 2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자 등록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에 대한 하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전자등록을 게시할 상업등기소의 웹사이트가 준비되지 않아, 전자 등록 제도의 시행은 사실상 연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Decree 05의 하위규정으로 투자기획부(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가 제정한 Circular 01이 2013년 4월 15일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다음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1) 관할 성(Province) 정부 등기 부서에 신청
- (2) 상업등기소 산하 등기지원센터에 신청
- (3) 직접 상업등기소 웹사이트([www.dangkykinhdoanh.gov.vn](http://www.dangkykinhdoanh.gov.vn))에 등록

다만 당초 상업등기소 웹사이트가 2013년 4월 15일부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회사가 직접 전자 등록을 할 수는 없으나, 조만간 상업등기소 웹사이트가 운영을 개시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허가서(Investment Certificate)의 발급/변경 후 30일 내에 별도로 해당 내용을 전자등록하여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최신 해외정보 - 캄보디아 ■

### 캄보디아 재정관리법 개정-주식이전 등록에 대한 등록세 부과

캄보디아 정부는 2012년 12월 26일 캄보디아 정부 예산의 수입, 지출에 대한 법률인 2013년 재정관리법을 개정, 공표하였습니다. 2013년 재정관리법은 정부에 대한 등록세 규정인 재정관리법 40조를 개정하여 등록세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에 대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그간 실무에서 혼동이 있었으며 토지소유권의 이전 등록과 달리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사실상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번 재정관리법 제40조의 개정으로 주식 양도의 경우에도 주식가격의 0.1%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위 개정조항을 소급적용하여 과거 발생한 주식양도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모두 납부하여야만 주식양도의 신규 등록을 해 주는 것으로 본 조를 해석운영하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 변경된 2013년 재정관리법(Law On Financial Management)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Article 12 (Law on Financial Management for Year 2013)

Article 40 of Law on Financial Management for Year 1995 promulgated by Royal Decree No. 11.NS.94 dated December 31, 1994 shall be amended as below:

Article 40-New: Registration tax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

1. 4% of the immovable property price in respect of transferring of ownership right or possessory right on building and/or land or possession of shares in kind of immovable property in the company.
2. 4% of price of means of transportation or vehicles in respect of transferring ownership right or possessory right over the means of transportation or all kind of vehicles.
3. 0.1% of shares price in respect of transferring of any or whole part of shares of the company.
4. 0.1% of contractual price in respect of contract on providing services or supplying goods using state budget.
5. 1,000,000 (one million) Riels for legal documents, such as letter of incorporation of company, letter of merging of company and company dissolution.

## ■ 최신 해외정보 - 러시아 ■

###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러시아연방 민법 시행 예정

2012년 5월 7일 러시아연방법률에 따라 '러시아연방 민법 제1편 제1장, 제4절 및 제5절, 제3편 1153조'가 대폭 개정되어,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거래, 거래무효 효과, 소멸시효 등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수의 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개정 민법 시행 전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된 민법 규정에 특히 유의하여 그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러시아연방 주식회사법 개정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8일로 단축

2013년 4월 5일 러시아연방 법률 제47-FZ에 따라 러시아연방 주식회사법 제41조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러시아정부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금융기관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이 45일에서 8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기존의 45일이 적용됩니다.

### 러시아연방 정부 소유 기업 매각계획 수정 발표해

2013년 4월 18일 러시아연방 정부는 2011-2013년도 러시아연방 정부 재산 민영화 기본방향 및 계획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러시아연방 정부는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43개 비공개주식회사 주식, 11개 유한책임회사 지분, 부동산을 포함한 기타 재산 727건을 금년 말까지 매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러시아연방 정부는 3,517개의 연방국영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2,950개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연방 정부가 100% 주식을 보유한 주식회사의 수는 1,757개에 달합니다.

## 러시아연방 정부 표준실시협약 개정해

2013년 3월 18일 러시아연방정부령 제231호에 따라 표준실시협약이 개정되었습니다. 표준실시협약은 러시아연방 실시협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4항에 근거하여 러시아연방 정부가 작성하며, 수도, 난방, 가스, 전기, 하수, 생활폐기물재활용 시설 등 공공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운영에 대한 투자자(외국인투자자 포함)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권리, 의무와 책임을 정하는 기본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 ■ 최신 해외정보 - 일본 ■

### 카지노 합법화의 움직임

최근 일본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카지노 합법화를 둘러싼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경도에 카지노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동경도지사를 중심으로 제기된 적은 있으나, 최근에는 카지노 합법화 움직임에 중앙정부와 국회의원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6월에 책정할 [신성장전략]에서 지역을 한정된 특구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카지노 합법화를 검토 중이고, 초당파 모임인 [국제관광산업진흥의원연맹]도 가을의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경뿐 아니라 오사카시도 카지노 합법화에 적극적입니다. 하시모토 오사카시장은 오사카의 2014년 예산에서 오사카 항의 인공섬과 간사이 국제공항 주변의 연안지역을 염두에 두고 카지노 유치 조사비를 계상하는 한편, 카지노 합법화를 목표로 함과 동시에 행정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지노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고용창출 등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풍기문란, 돈세탁, 폭력단의 자금원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 소니, 의료사업 진출

가전제품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소니가 의료사업에 진출할 것을 밝혔습니다. 올림푸스에 대한 출자를 계기로 소니는 2020년에 의료관련사업에서 2000억 엔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니는 2012년 3월 기에 과거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종래 주축 사업인 TV사업을 대신할 주력사업으로 의료기기업 생산을 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로 올림푸스와 함께 의료용 내시경생산을 위한 공동회사도 설립하였습니다.

### 세제개정, 일본국적이 아니라도 상속세 부과대상

일본에서도 해외자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과세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번 세제개정으로 인하여 올해 4월부터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상속인이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도 과세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혹은 피상속인, 상속인이 모두 5년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외재산에 과세되는 일은 없었습니다.